

대구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가단1343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섭

변론 종결 2024. 11. 13.

판결 선고 2024. 12.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0,077,923원 및 그 중 79,533,568원에 대하여 2023. 7. 27.부터 2023. 10. 2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2.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2. 9. 27. 접수 제109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2.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2. 9. 27. 접수 제109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3. 피고 A과 보증금액 76,5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65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23. 2. 7.부터 이자 상환을 지체하여 2023. 4.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3. 7. 27. 피고 A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79,533,568원을 변제하였고, 대지급금 440,825원과 위약금 103,520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2022. 9. 27. 배우자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2. 9. 27. 접수 제1094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들은 2022. 12. 19.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증여가 피고들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초과하는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증여 이후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점, ②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대출금 이자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원고가 피고 A 대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C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98,685,000원 상당의 경북 예천군 E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 등에 대하여 합계 286,577,39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위 각 증거들과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할 무렵인 2022. 9. 20.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2022. 12. 19.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피고들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약 2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피고 A이 2001. 12. 1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온 점, ② 협의이혼 당시 피고 A은 위와 같이 적극·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B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증여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A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피고 A이 여전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B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앞서 본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증여의 경위, 대한민국이 2021. 11. 22. 피고 A 소유의 경북 예천군 E 토지를 압류하였고, 이 사건 증여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3. 10. 16.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 B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취소와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운

별지